



법률상담 - 알기 쉽게 풀이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본고는 민원인,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 중에서 닭고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했으니 본 질의·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의 보관 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질 의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BOX상태로 포장할 때 외포장에 라벨을 붙이고 속에 내용물에도 라벨을 붙여서 유통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서 박스를 개봉 후에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과 박스에 붙어있는 라벨이 일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박스에 붙어있는 라벨을 떼어놓아도 괜찮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일) 2012. 07. 04.

회신내용)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최소 판매단위가 내포장일 경우 내포장에, 외포장일 경우 외포장에 모든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축산물의 보관 시 최소 판매단위의 표시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축산물위생관리법 질의·응답집